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5가단11605 집행판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06. 6. 30.
판 결 선 고	2006. 9. 22.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영국 중재판정부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인 데이빗 패링톤이 2004. 8. 12. 판정한 별기 기재의 중재판정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2001. 12. 15. 인도의 샌드헤드스항에서 중국의 리안륭앙항까지 철광석을 운반하기 위하여 원고와 원고 소유의 '이란 에쉬라기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1회 정기용선하기로 하는 용선계약(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용

선계약의 준거법을 영국 법률로 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중재판정문), 2(번역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용선료의 지급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영국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영국 중재법에 따라 선정된 중재인 데이빗 패링톤은 2004. 8. 12. 별지 중재판정 사항과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영국에서 중재판정을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용선계약서), 을 제1호증(용선계약서), 을 제2호증(서신), 을 제3호증(변경된 용선계약서), 을 제4호증(서신)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개인을 통하여 중개가 이루어진 후에, 이 사건 용선계약의 중개인인 브리스크 마린 서비시스(Brisk Marine Services, 이하 브리스크라 한다)는 2001. 12. 경 인도 뭄바이에 있는 피고의 대리인인 마헨드라 레디(Mahendra Reddy, 이하 '마헨드라'라고만 한다)를 통하여 용선계약서 2부를 첨부하여, 피고가 서명한 후 다시 원고에게 반송하여 원고가 이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고의 승낙을 받은 대리인인 마헨드라는 이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으며, 피고가 서명할 당시의 용선계약서 제36조에는 홍콩에서 중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반송받은 용선계약서 제36조의 홍콩을 영국으로 정정하여 피고에게 송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이후인 2004. 11. 19.에야 용선계약서의 변경에 관하여 원고에게 항의하는 서신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이고, 뉴욕협약 제4조 제1항은 중재합의가 제2조에 정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

(agreement in writing)'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2조 제2항은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란 "당사자들에 의하여 서명되었거나 서신(letter) 또는 전보(telegram) 교환 속에 담긴, 주된 계약 속의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의 존재가 인정되는 서면이면 뉴욕협약에서의 중재합의의 서면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3호증은 원고의 용선중개인이 원고에게 보낸 문서로 당사자 사이에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 등 중재합의의 서면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원고의 용선중개인이 계약 체결전에 합의된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낸 갑 제3호증에 이 사건 용선계약에 있어 중재지를 영국으로 하는 내용이 있고, 또 원고에 의하여 중재지가 홍콩에서 런던으로 수정된 용선계약서를 받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가 영국 중재인에게 중재를 신청한 이후에 비로소 수정 부분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에 런던을 중재지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 갑 제2호증의 1(용선계약서)의 수정 부분에 당사자들의 간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용선계약서 상에 수정되어 교환된 중재합의 부분은 뉴욕협약에서 요구되는 중재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는 중재합의의 원본이나 인증된 등본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중재합의의 서면으로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용선계약서)이 피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과 동일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그 성립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그 원본이나 인증된 등본이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 _____

중재판정 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5,583.33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2. 3. 3.부터 완제일까지 연4.25%의 3개월 단위의 복리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영국화 1,250.00파운드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2.부터 완제일까지 연6.25%의 3개월 단위의 복리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끝-